

#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

(의결안건 제77호 관련)

2021. 4. 7.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4월 7일(수) 14:00~19:54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이 명 순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 4. 회의경과

- 의결안건 제77호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먼저, 검사국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위원회의 2016년 2월15일자 유권해석에 의하면 투자광고의 개념 요소로서 매매유인의 목적 유무를 가지고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이 있는 것은 맞음. 다만, 이것은 전·후 맥락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자본시장법은 ‘투자광고’를 금융투자업자의 영위업무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광고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광고’를 사업자 등이 상품을 방송, 신문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금융위원회에서는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의 의미와 관련해서 무조건 불특정인에게 이런 정보를 널리 알리면 광고냐, 그것은 아니고 오히려 더 좁게 불특정 다수한테 배포하더라도 매매유인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신 것 같음. 그렇기 때문에 관리 중인 고객을 특정하여 문서를 보내더라도 기존 가입상품의 수익률 제공 등은 신규 거래와 무관하기 때문에 광고는 아니지만 새로운 상품의 정보를 전달할 경우에는 광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계심.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와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광고인데 금융위원회는 이 불특정 요건 플러스 매매 유인의 목적까지 추가해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고 보신 것 같음. 따라서 저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고객들 그리고 그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상품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광고 규제가 적용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 다음으로 설명내용 확인의무 그리고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된 내용임. 검사국에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으로 지적함에 있어서 참고하셨던 기업은행 검사부의 감사 결과는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것이 아니었음. 당시 투자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라든지, 판매직원 등의 대필 여부를 조사했었던 것뿐임. 검사국에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으로 지적한 건들 중에서 대부분은 투자자 본인 또는 내점한 직계가족, 업체직원 등에 의해서 대필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상품내용에 관한 설명은 다 이루어졌다고 확인이 되었음. 저희는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당 직원이 분명히 이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러 온 본인이나 대리인들한테 설명을 다 했는데 이것이 대필이라는 이유로 설명내용 확인이 안 된다면 과연 그것이 위법성이 고의, 악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음. 다음으로 금감원이 제시했던 설문사항 8가지를 보고 그중에 많은 부분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고객에게 제안서를 제공했으나 고객이 수령하지 않은 경우 또는 고객의 요청으로 영업점 직원이 체크한 경우,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모펀드에는 법령상 투

자설명서라는 이름이 달린 서류를 작성할 의무는 없고 대신에 운용사에서 작성한 상품제안서를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제공하기 때문에 금감원이 제시한 설문사항에는 투자 설명서를 쫓느냐는 질문 밖에 없었기 때문에 PB들은 '내가 준 것은 제안서이지, 투자설명서는 아니다.' 이런 생각에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체크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음. ⊗⊗⊗⊗신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 입장의 요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해하는 ⊗⊗⊗⊗신탁은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이기는 한데 실제로 파생상품에 투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인 것이고, 가사(假使) 입장을 달리해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특정금전신탁이라고 했을 때라도 해당 상품의 판매는 펀드 투자자문인력 자격이 아니라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런데 지적하신 직원중 3명은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상품의 판매시기는 이들의 자격 유효기간 내에 있었던 부분도 감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또 본 건의 파급효과, 그다음에 피해자들의 반발 등 우려들을 잘 알고 있고 피해자들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예를 들어 ⊗⊗⊗⊗신탁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적극 수용하기로 저희의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고 □□□□□ 펀드 같은 경우에도 이미 50%에 대한 선지급을 했고 나머지 부분도 최근 시작된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임. 고객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것이 대출이지 선보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음. 손실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 가지급, 후 정산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이 정산을 대비해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담보확보를 위해 수익증권계좌에 대해서 질권을 설정했던 것이고 이러한 업무형태는 기업은행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된 다른 시중은행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다 이런 선보상 형태로 진행하고 있음. 은행들이 돈을 주기 싫어서 안주는 것이 아니고 아직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부로 보상을 해 줄 경우에 은행이사들의 배임책임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일부 다른 견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한테 있고 그에 대한 입증은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어야 된다고 이해하고 있음.

- ▶ (진술인)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부분은 첫 번째로 서류상의 하자 여부임. 현재 28건에 대해 '하자 없음'을 확인하였고 저희가 판매직원 별로 해서 서류상 하자 여부를 점검하였고 그 내용을 보시면 '듣고 이해하였음'이라든가, 회사법인의 명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자필서명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리고 누락된 부분이 없었음을 소견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음. '증빙서류 계좌별 점검내역'을 보면 이 자료가 당시 검사부에서 실제로 점검했던 자료로 보시면 되겠음. 해당 내용 관련해서 '관련직원 의견'란을 보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에 본

건과 같은 상품을 신규한 후 정상 상환하는 경험이 있고 상품설명, 손실위험 등에 대해 적정하게 설명하였다는 증빙이 들어가 있음. 이와 관련해서 검사부는 상품설명서나 설명의무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아니고 업체직원이 대필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지 않다는 부분을 지적했음을 알 수 있음. 과태료와 관련된 설명의무는 이 건과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람. ‘증빙서류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건에 대해서도 누락된 부분 없이 체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자필서명과 자필로 기재된 부분 또한 확인할 수 있었음. 이 건과 관련해서 검사부에서 당시 시점의 계좌를 점검한 내역을 보게 되면 당시 배우자가 방문을 해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상품을 가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 상품설명이 다 되었고 배우자의 경우에도 저희가 해피콜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 또한 이 상품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이 건도 동일하게 배우자의 대필 부분이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음. 설명의무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류상의 흠결 여부에서도 이상을 발견할 수는 없었음. 검사부에서 지적한 부분 관련해서는 설명내용 확인의무가 아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리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다음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보시면 동일한 방법으로 서류상 하자 여부를 점검하였고 역시 누락되거나 빠진 부분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해당 설명서 교부의무는 금감원에서 배포한 질문지를 통한 답변서가 지적의 근거가 되었기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을 확인하였음. ‘설명

을 듣고 이해하였음'과 고객의 자필서명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여기에서 주요 포인트는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았음, 거부함' 네모박스 안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음. 다음으로 '투자자가 직접 '받았음'에 체크하였으나 (간이) 투자설명서는 교부하지 않았음'으로 체크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지적이 된 상태임. 다만, 저희가 해당 내용을 파악해보니 고객님의 부친과 법인이 다 가입하셨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였고 당시 제안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였지만 (간이)투자설명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판단했을 때는 적절한 답변이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음. 다음 '증빙서류 역시 동일하게 '듣고 이해하였음'과 서명은 다 자필로 기재가 되어 있고 네모 칸에도 체크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해서도 답변확인서를 보시면 해당 VM팀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질문지에 대해서 '본인이 임의로 '받았음'에 체크하였으나, (간이)투자설명서는 교부하지 않았음'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영업점 VIP고객이기 때문에 절차에 맞춰서 설명을 다 드렸고 다만, 설명할 때 별도의 (간이)투자설명서가 없는 관계로 제안서를 제공한 사례였음. 이런 부분을 제공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류 점검하는 과정에서 네모박스에 체크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객님의 말씀드린 후에 대신 체크한 사례였음. 해당 건에 관련하여 VM팀장들이 (간이)투자설명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느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주눅이 든

상태에서 답변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직원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어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저희가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정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바라는 바임.

- ▶ (진술인) 저희 ⊗⊗⊗⊗신탁은 자본시장법상 무자격자에 의한 투자권유를 금지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자격제한강화 취지도 파생결합증권 등 파생상품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을 규제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함. 다만, ⊗⊗⊗⊗신탁이 파생상품 중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품의 판매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니라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음. ○○○의 자료를 보면 소속은 ○○회사로 되어 있고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음. 자격증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인데 이분의 자격등록일은 2010년 x월x일부터 계속 되어 있고 보수교육 등 효력정지 부분이 있는데 2020년 x월x일로 되어 있음. 저희 같은 경우 ⊗⊗⊗⊗신탁을 판매한 시기는 2019년 6월부터 7월이기 때문에 당시에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유효함을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취지에 따라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금융감독원 측에도 제출되어 확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음.

- ▶ (진술인) 투자광고 발송 내역은 처음에 ☞☞☞☞ 지점에 관련된 고객의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안내 메시지가 나갔음. 첫 번째와 동일한 내용으로 나가게 되었고 1차 메시지 관련해서 설사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2차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안내해 드린 다음에 고객께서 상품가입을 희망하고 다시 한 번 안내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10월에 발송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음. ☞☞지점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안내했기 때문에 고객님을 명시해서 일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특정 소비자를 지칭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음. 마지막 ☞☞ WM센터의 발송건을 보면 사전에 예약하신 분들에 대한 안내차원에서 나갔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위서를 보면 사전에 예약한 고객을 대상으로 상품광고를 위한 발송이 아닌 요약 설명을 돕기 위한 발송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관련해서 해당 고객들이 다 가입했느냐고 말씀하셔서 가입한 것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매대를 희망하는 고객의 요청에 의한 발송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음. 다만, 저희가 작성한 입증자료 관련해서 이것을 과연 입증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준비했던 부분은 최대한 당시의 자료를 활용하였음.
  
- ▶ (진술인) 금감원 검사국 의견 중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명서 교부의무는 있지만 교부의무를 교부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음. 이 부분은 작년에 있었던 DLF불완

전 판매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였고 그리고 수령을 했다는 사실을 은행이 입증하지 않는 한 설명서가 교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당시 ○○은행의 설명서에는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았음' 또는 '수령 거절함'이라고만 되어 있고, 사모펀드의 경우 '사모집합투자를 위한 설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연 사모펀드인 경우 제안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디에 체크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음. 그래서 ○○은행 사태 때는 430건 정도가 설명서 교부의 주요내용 설명에 공란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음.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이것을 보면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간접증거로 제시했던 배경이 있는 사건이었음. 하지만 본 건에서는 은행 담당직원이 설명 올린 바와 같이 '교부받았음'에는 다 체크가 되어 있음. 다만, 그것이 대필이라는 내용만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은행 사건을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음. 금감원에서는 「표준투자권유준칙」 상에 이 '교부받았음', '수령거절함'은 투자자의 자필 기재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셨음. 저희가 「표준투자권유준칙」을 확인해 보았는데 자필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20년 2월20일자 개정된 「표준투자권유준칙」에만 자필 기재하라는 얘기가 나옴. 그런데 본 건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있었던 행위들이기 때문에 해당 「표준투자권유준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2020년 2월의 「표준투자권유준칙」 내용을 보더라도 설명의무의 확인은 자필 또는 육성으로 하라고만 되어 있지, 설명서 교부의무 확인을 자필로 해야 된다

는 얘기는 없음. 세 번째 2020년 「표준투자권유준칙」이 2018년도에 소급해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령상 의무가 아님. 이것은 협회 차원의 모범규준, 지침과 같은 것임. 따라서 이러한 협회 차원의 지침을 위반했다고 해서 법령상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과연 건당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아닐 수 없음. 위반동기와 위반결과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설명내용 확인의무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명 올린 바와 같이 담당 직원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서 내방한 고객들 또는 고객의 대리인한테 설명을 하였고 설명서도 다 교부하였음. 다만, 금감원에서는 본인한테 확인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명내용 확인도 안 했고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근본적으로 법 위반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했는데 본인 확인이 아니고 대필을 했으니까 '고의'로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동기에 있어서 '상'으로 볼 수 있을지, 저희는 그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사항임.

- (보고자) '설명서 교부 여부에 대한 고객의 자필 기재 필요성' 관련해서 금투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이 2020년 2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소급적용 안 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 전의 지침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설명서를 받았느냐 설명을 들었느냐 하는 것은 투자자 본인에게 은행에서 의무를 준수했느냐의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임. 그 다음으로 위반동기와 위반결과 관련

한 과태료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고의'냐는 주장을 하셨는데 설명을 했다는 주장은 지금 현 시점에서 은행 직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설명을 들은 고객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은행 직원과 투자자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이나 제반 규정에서 자필기재로 본인 의사를 확인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시점에서 은행 직원한테 "설명했느냐?"고 하니 "설명했다." 그리고 "설명서 교부했느냐?"고 하니 "설명서는 교부하지 않았지만 제안서는 교부했다."는 것은 은행 직원의 주장이지, 고객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설명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임. 그리고 위반결과와 관련해서 개별 각각의 행위가 언론에 공표 안 되었기 때문에 위반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이나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그리고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투자광고 규정 위반 이 행위의 결과로 투자펀드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했음.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들이 언론에 다 보도되었고 중소기업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보도되었음. 이런 큰 시각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지, 개별 각각의 행위가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안 된다는 것은 너무 지엽적인 논리라고 생각함.

- (보고자) 몇 가지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설명 내용 확인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지적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들려

서 저희가 법상 설명의무와 설명했음을 확인받는 설명내용 확인의무는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설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은행 측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자녀, 배우자, 업체 직원이 방문해서 설명을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지적된 건임. 정당한 대리인이 와서 설명 들은 것이 아니라 설사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대리인이 들은 것이 아니고 그 설명내용 확인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음. 두 번째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사모펀드는 투자설명서를 안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기본적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할 때는 투자설명서 작성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안서라든지 다른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PB들이라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임. 그 다음에 그것을 PB들이나 VM팀장들이 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혼선이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저희가 그 이외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다든지, 다른 자료를 교부했다는 내용이 없었음.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더라도 투자설명서라는 용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교부한 것이 없다고 보고 제안서를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표시했다는 내용은 사후적인 얘기로 저희들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 (보고자)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금감원이 검사를 할 때나 은행 검사부에서 자체 조사할 때 은행 PB들이 주눅

이 들어서 제대로 답변 못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음. 그 당시 은행 직원들이 가장 진실하게 답변했을 것 같고 은행 측에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유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답변한 내용이 오히려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작년에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중소기업은행에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도록 하고 은행 검사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하면서 사태발생 원인규명과 책임 규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관계에 가장 근접한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생각함.

- (위원)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은 설명의무이고 제47조제2항을 보면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에는 ‘전자우편 그밖에 이하 비슷한 전자통신, 우편,’ 이렇게 넓게 나와 있음. 그런데 제2항을 보면 확인의무와 관련해서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서명, 기명날인, 녹취. 특히 서명과 기명날인 두 가지는 자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임.

- ▶ (진술인) 기명날인이라는 것은 이름이 기재된 이후에 도장을 찍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자필로 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이해가 됨.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에서 말씀하셨던 「표준투자권유준칙」에 의하면 2017년 12월12일자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

내용을 확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2020년 2월20일자 「표준투자권유준칙」에 의하면 ‘설명의무를 이행하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에서 ‘이에 따른 설명의무는 단순확인 방식으로 이행할 수 없으며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된다.’고 2020년 2월에 비로소 투자권유준칙에 들어가 있음. 이에 의하면 법이나 시행령에는 그전까지는 반드시 자필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이해가 되며, 참고로 ‘듣고 이해하였음’이라는 부분과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았음’ 또는 ‘거부함’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판매했을 때 ‘듣고 이해하였음’을 대필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고객들이 다 쓴 부분이고 체크박스 부분을 대필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음.

- (위원) 그리고 여기 의견서를 보면 대필주체에 배우자, 자녀, 모친 이렇게 가족으로 보이는 분들이 등장하는데 이 부분을 명시한 이유는 가족이니까 대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 ▶ (진술인) 검사부가 점검했을 때 대필주체라고 들어간 내용을 보면 판매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 그러니까 대부분 실질적인 위임을 받으신 분들이 작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음.
- (위원) 두 번째 설명서 교부의무와 관련해서 대리인 측에서 확인의무와는 관계가 없다는 의미인지?

- ▶ (진술인) 설명의무에는 확인의무가 있는데 설명서 교부의무에는 확인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위원) 확인의무는 없고 교부의무만 있으니 '고객 요청으로 미교부', '고객이 '받았음'에 체크하고 안 가져감', '고객이 '받았음'에 체크하고 제안서 제공'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인지?
- ▶ (진술인) 설명서를 진짜 교부했느냐는 문제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평이한 내용을 담았던 부분임. 다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질문지를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직원들이 노력한 여부를 판단해 보면 결국 설명서 교부를 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음.
- (위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대필인데 만약 대필이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태료가 상당 부분 경감될 것 같은 생각임. 결국 회사 쪽은 설명내용 확인의무나 설명서 교부의무와 관련해서 대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신지?
- ▶ (진술인) 일단, 저희가 판단한 대부분의 대필은 고객의 의사를 반영해서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임.
-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해서 보상을 할 때 대필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보상을 해 주는지?

- ▶ (진술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으로 선가지급이 다 지급된 상태임.
- (위원) 그다음에 지금 회사 쪽에서 주장하고 계신 것은 본인 자필기재라는 것이 2020년 2월20일자부터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2017년 12월에는 그러한 문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해당되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정확하게 2020년 2월20일 이전에 자필기재라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었는지?
  - (보고자) 2017년도 당시에 '설명서를 교부받았음' 또는 '거부하겠음' 이 부분은 '설명내용 고객확인란'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음. 법상 서명, 기명날인 자체는 취지상 고객이 직접 기재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될뿐더러 2017년 12월 당시 「표준투자권유준칙」에도 구체성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당시에 '고객확인란'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객이 진짜 설명내용을 확인받았는지 기재하는 중요한 부분으로써 취지상 고객이 직접 확인했다고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음.
- (위원) 금감원은 대필 부분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 (진술인) 기본적으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직원들이 제재를 받았음. 본 건 조치안에서 설명의무 위반, 부당광고, 내

부통제 위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금감원 단계에서 제재  
받음과 동시에 대필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모든 직원들이 다 제재를 받았음. 그래서 만약에 금융실  
명법 위반을 이유로 대필은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및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앞으로  
금융실명법 위반과 동시에 무조건 설명의무 위반, 설명  
서 교부의무 위반이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저희는  
동의하기 힘들.

▶ (진술인)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금융실명법과 자본시  
장법상 설명의무는 규제의 틀이 다르다고 생각함. 설명의  
무는 투자를 하는 투자자 측에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그것  
에 대해서 서명을 하는 것인데, 대부분 배우자나 자금을  
관리하는 가족들이 와서 투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 그  
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는 실명법 위반이니까 대  
필이 문제되거나 확인의무나 설명의무가 잘못됐다고 보는  
부분들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함.

○ (위원) 대필이 금융실명법은 위반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또  
는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지금 저희들이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사항을 보는 것임. '설명을 듣고 이해  
하였음'이 자필로 기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성명을 제대로

본인이 자필로 서명을 했는지, 두 개가 공통적으로 자필서명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인지?

- (보고자) 원칙적으로 그러함.

○ (위원)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은 결국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았음' 또는 '수령거절함'에 체크한 것을 본 것인지?

- (보고자) 맞음. 체크는 다 되어 있었고 그에 대한 질문지를 돌려서 질문지를 통해서 투자자 본인이 체크했는지 아니면 대필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같이 고려해서 판단한 것임.

○ (위원) 그렇다면 판매직원이 거짓말로 "투자자가 직접 받았음에 체크했고, 투자설명서를 직접 교부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금감원에서는 실제로 교부했는지, 대필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매직원의 설문에 100%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지?

- (보고자) 판매직원의 설문지와 기업은행 자체 점검할 때 직원들의 인터뷰와 저희가 마지막으로 관련서류(가입일자, 설명일자, 출력일자 등)들을 확인해서 최종 판단을 한 것임.

○ (위원) 지금 이것이 설문에 의존하고 있어 질문지 8개 항목 중에 "② 투자자가 직접 '받았음'에 체크하였으나, (간이)투자설명서는 교부하지 않았음", "⑤ 본인이 임의로 '받았음'에 체크하였으나, (간이)투자설명서는 교부하지 않았음", "⑥ 본인이 임의로 '거부함'에 체크하였고, (간이)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음”, “⑦ 투자설명서 교부대상인지 몰라서 체크하지 않았음(투자설명서 미교부)”, “⑧ 투자설명서는 WM 센터에서 일괄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체크하지 않았음”은 ‘부적정’이고, “① 투자자가 직접 ‘받았음’에 체크하였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직접 교부하였음”, “③ 투자자가 직접 ‘거부함’에 체크하였고, (간이)투자설명서도 교부하지 않았음”, “④ 본인이 임의로 ‘받았음’에 체크하였고, (간이)투자설명서를 직접 교부하였음”은 적법한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보고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문지 또는 점검결과로 ‘or’로 해서 원칙적으로 분류한 것은 맞음. ④번 4건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정’으로 분류한 이유는 그것이 3건인데 그중 1건은 해당 직원이 이미 교부하였다고 설문지에 답을 했는데 저희가 가입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거부함’으로 체크가 되어 있었음. 그러니까 본인은 교부했다고 주장하는데 처음에 ‘거부함’에 체크했다는 것은 저희가 ⑥번으로 분류한 것과 달리 불 이유가 없이 투자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고 나머지 ④번으로 분류되었던 2건이 있는데 그 2건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들의 판매내역을 저희가 직접 조사해 봤더니 ○○○이라는 직원이 판매한 것이 총 5건인데 그중 3건은 이미 교부의무 위반으로 분류가 되었고, 근접한 시기에 동일한 직원이 판매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직원이 또 다른 설문서에 의하면 이 2건에 대해서 투자자정보 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했음. 그렇다면 이 직원이 판매한 총 5건 중에 3건에 대해서 이미

위반으로 분류되었고 ④번으로 표시한 2건에 대해서도 투자자 정보확인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판매시기가 근접한 점 등을 볼 때 저희가 그 직원의 설문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위반으로 분류한 것임.

- (위원) 형식적으로는 ‘적정’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부적정’이라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답변관련 의견진술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음. ‘(간이)투자설명서가 아닌 제안서로 고객에게 상품설명 드렸고, 신규통합서류도 고객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였음. 상품설명 후 제안서 제공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서 ②번으로 답변함’이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 ‘(설명서 교부의무)’를 보시면 “고객이 ‘받았음’에 체크하고 제안서 제공, 위반 아님”이라고 되어 있음. 제안서를 제공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슨 제안서를 제공했는지? 이런 것이 다수 있으니 금감원 자료도 신뢰성이 없고 진술인 자료도 신뢰성이 없음.

- ▶ (진술인) 지금 내용에 대해서 고객에게 설명을 드렸고 고객이 직접 자필로 작성했기 때문에 상품설명 후 제공 여부가 기억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개연성을 봤던 것이고 VIP고객들의 경우에는 보통 제안서를 들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고난 후에 그냥 내려놓고 가는 경우도 많음. 그

런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체크했을 때는 제안서로 직접 설명 드리고 '받았음'에 체크되었기 때문에 행위 여부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음을 말씀드리고 싶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직원들이 의견확인서 작성할 때 제안서 제공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제공 여부는 고객이 이것을 실제로 수령해 갔는지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음. 분명히 고객에게 제안서 보여드리면서 했는데 이것을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가 애매하다는 것이지, 제공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이 애매하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됨.

- (위원) 그것은 설명내용 확인의무는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
- ▶ (진술인) 부연설명을 드리면 투자자가 직접 '받았음'에 체크했는데 VM팀장이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서류를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음. 다만, 여기 질문서에서는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이라고 했으니 그렇게 체크했던 부분이었고 저희가 제안서를 고객이 들고 갔는지의 여부를 물어봤을 때 "그 부분 관련해서는 가지고 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조금 애매하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을 기재한 것임. 그래서 투자자가 '받았음'에 직접 체크하고 그것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 것임. 이 설명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저희가 일일이 다 전화를 드리고 확인하고 그때 상황을 점검하고 고객님들이 정말 그런 VIP고객인지를 여부를 다 체크했던 것임.

○ (위원) 대리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무자격자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3명의 직원들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그렇다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닌지?

- (보고자) 검사당시에는 은행에 어떤 자격증이든 모두 제출 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증을 제시하지 않아 감안할 수 없었음.

○ (위원)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

▶ (진술인) 저희가 당시에는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에 대한 자격증 보유 여부에만 집중하려고 했기 때문임

○ (위원) 무자격자 관련한 3건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동의를 해서 그 과태료는 경감이 될 것 같음. 투자광고 규정 위반은 예를 들어 동일한 것을 두 건 보낸 것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안내해 준 것은 제재양정의 경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가장 중요한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과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은 금감원과 회사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일치를 시켜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음.

- (보고자) 한 가지만 사실관계를 정정하여 말씀드리고 싶음. 실명제 위반과 관련하여 대필이기 때문에 위반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대리인이 방문했을 때 가족의 정당한 대리인. 즉, 위임장이라든지, 인감증명서라든지,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같은 것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명제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당한 대리인이 아니라면 판매 당시에는 투자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이고 이는 실명제 위반이 되는 것임.
- (위원) 여기 대필 건들이 쪽 언급이 되고 있는데, 28건 중에 정당한 대리인은 있는지? 아까 23건이 정당하지 않은 대리인이라고 했고 나머지 5건은 어떻게 되는지?
- (보고자) 대필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라든지 직원에 의한 대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음. 은행직원이 직접 대필을 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임. 그러니까 모두 대리인이 한 것은 아님.
- (위원) 그러면 판매직원이 대필한 것이 지금 28건 중에 몇 건인지?
- (보고자) 중소기업은행 측에서 제출하신 자료를 저희가 봤을 때 5건임.
- (위원) 은행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설명내용 확인은 투자자한테 제대로 설명이 되어야 되

는 것인데 투자자한테 제대로 설명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대필한 것은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떠나서 설명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 (진술인) 계좌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서명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민법적으로 적법한 위임장을 받았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로 실제 그 사람의 대리인이라고 와서 거래를 한 사람한테 설명을 했고 그 사람의 필체로 '듣고 이해하였음'을 썼다는 얘기임. 만약 금감원 논리처럼 본인이 아니면 전부 다 설명의무 위반이라는 논리가 된다면 앞으로 금융거래 있어서는 본인만 거래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음.
- (위원) 우리가 실질을 지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에 의한 것이고 그 형식의 판단기준이 최소한 자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대필일 경우에는 설사 정당한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그 대필을 했을 때도 투자자한테 제대로 설명이 됐을만한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금감원의 기본적인 생각인거 같음.
- ▶ (진술인) 물론 가입한 사람이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대리권이 인정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민법상 배우자의 경우에 일상가사대리권이 있고 대부분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충분히 듣고 그 상품에 가입하였음.
- (위원) 설명서 교부라는 것은 설명을 위한 수단임. 통상 제공을 해 주면 듣고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설명을 충분히 다

듣고 설명서 내용을 보고 이해는 했지만 두고 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은행 측 입장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진술인)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당시 사고가 나고 고객들의 엄청난 항의가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그 보기 문항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상품을 소싱하고 상품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팀장조차도 '(간이)투자 설명서'라는 문구만 보고 '나는 제안서를 교부했으니까 교부하지 않았지.'라고 체크를 해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지적이 됐음. 이런 사례를 보면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직원들의 실질적으로 노력하고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가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지적이라든가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다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입증하고자 통화했었던 내용들을 입증자료로 제출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음.

▶ (진술인) 검사국에서 이 설문지에 의해서만 교부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다른 증빙도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까 저희 샘플로 보여드렸던 계좌가입서류 '듣고 이해하였음', '교부받았음' 이렇게 체크한 것을 말하는 것임. 금감원에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잡은 내용을 가지고 본인이 한 것 아니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하셨던 것이지, 설문내용의 진정성을 다른 견해로 검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금감원은 결국 이 설문내용, 또는 당행 검사부의 조사내용,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음. 그래서 PB들의 설문내용을 못 믿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는데 또 어떤 내용에서는 PB들이 이용했다고 하니까 인정했다, 그래서 50% 감경했다고 지금 나오고 계심.

- (위원) 왜 같은 준칙을 가지고 양쪽의 주장이 다른지?
  - ▶ (진술인) 금감원에서는 ‘설명서를 교부받았음’, ‘듣고 이해하였음’이라는 샘플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듣고 이해하였음’을 당연히 자필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그 부분은 확인의 한 방법에 불과하지, 자필로 하라는 얘기는 없다는 입장임.
- (위원) 만약 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진술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2020년 2월부터 유효하다면 금감원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 (보고자) 회사에서 준칙을 언급하기 이전에 이미 법에서 서명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서명이 본인이 아닌 사람이 서명해도 된다면 확실히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 것임.
- (위원) 설명내용 확인 의무의 대필주체를 보면 ‘배우자’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배우자들이 전부 내점을 했나 하는 의문점이 좀 생김.

▶ (진술인) 대부분의 경우 은행직원이 한 것도 있지만 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와서 배우자를 대리해서 작성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임.

- (참여자) 대필이나 대리인이 와서 작성했다는 부분에 대해 아무런 위임장이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생소한데, 보통 이런 식으로 투자나 이런 것을 받고 있는지?

▶ (진술인) 그래서 실명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것임.

- (참여자) 주요내용 설명확인서나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류를 보면 본인이 아닌 경우 대리인이 서명할 수 있는 란이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안 받은 것인지?

▶ (진술인) 그 부분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VIP고객임. 은행에서 VIP고객의 성향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저희가 사모님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도 많고 VIP고객을 관리함에 있어 은행 특성상 고객의 편의를 많이 봐 드릴 수 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음.

- (참여자) 나중에 손실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 등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신 것인지?

▶ (진술인) 최초에 그 부분에 대해 위임장을 받아서 그 관계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들에 대해서 그런

편의를 봐 드린 경우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잘 못한 것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바임.

▶ (진술인) 한 번 거래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만기가 되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도 하고 배우자 명의로 추가로 거래를 하기도 함. 이럴 때 매번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임.

- (참여자) 설명내용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설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 최종적인 입증책임이 금감원 측에 있다는 주장인지?

▶ (진술인) 그렇게 알고 있음.

- (참여자) 왜냐하면 유사한 보험 사건이나 의료행위 같은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그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보험회사나 의사들에게 묻고 있음. 그런 것과 비교해서 법원 판례나 이런 것에 대한 근거로 입증책임이 금감원 측에 있다고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는지?

▶ (진술인) 저희가 입증책임 관련한 판례들을 꼭 기재했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사고나 일반특별법상의 입증책임의 전환규정은 다 근거법령에 입증책임을 전환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행

정처분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서 처분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 (보고자) 자본시장 법규에 따르면, 판매사로 하여금 설명서 제공 의무나 법상 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금감원이 검사 나와서 요구할 때 3일 이내 이것을 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반으로 지적하는 것임.

▶ (진술인) 저희들이 가입서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안 믿으시니까 이렇게 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저희가 '듣고 이해하였음', '교부 받았음'을 다 체크 받아서 제시를 했는데 "이거 이 사람이 쓴 것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진술인 측에서는 은행 직원이 대필을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주로 가족관계에 있거나 회사의 직원들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위임장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 떼어 가지 않는지? 그런데 이분들이 VIP고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통상 이렇게 하는지?

▶ (진술인)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입증해야 되는데 금감원은 그 입증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상당히 일리가 있음. 금감원이 조사를 하고 해당 은행이 또 자체점검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금감원은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중소기업은행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로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봄.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증선위에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금감원에서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람. 금융위에서도 봐 주셔야 될 것이 행위의 절차법상 문제가 없는지, 이 건에 대해서 사전통지를 다 적법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절차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 (진술인) 지금 지적건수가 차이 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전체 건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28건,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63건에 대해서만 얘기를 들었을 뿐이지, 어떤 건, 어떤 PB, 어떤 고객에서 위반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저희가 받은 바 없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자격증 관련해서 당시 펀드자문인력이나 파생상품자문인력이라는 것을 헛갈릴 정도로 질문하셨다는 것도 검사하는 입장에서는 온당하지 않은 것 같고 만약 그런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 답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해당 직원한테도 문제가 되고 과태료 금액도 건당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금투협에 협조를 하든지 조회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 해당 법조에 관련해서 맨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것, 그것이 성립하지 않으면 규정위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소홀이

했다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싶음. 그리고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이라든지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행법 체제에서는 금감원이 입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금감원이 입증해야 되는 기본 전제 하에서 설문조사 혹은 자체감사 이런 것들을 불완전 판매 관련해서 위반을 지적할 적에 최초로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것을 제재근거로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기본적으로 의문임. 앞으로 불완전 판매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에 근거해서 제재하실 것인지, 설문조사라는 것이 해당 상황이나 설문조사를 하는 취지, 어떤 맥락, 흔히 여론조사할 때 설문하는 질문에 문구의 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또 이번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금감원이 했을 때 대비 지금 현재 다시 부인을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 스스로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뒤집으려고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마당에 설문조사 외향상으로는 체크표시도 되어 있고 서명도 되어 있고 ‘듣고 이해하였음’이라고 서명도 되어 있는데 대필, 자필 이런 것을 전부 자체 조사와 감사, 설문 이런 것에 의존해서 진위를 다투는 것 자체가 그것도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0배 적용 배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에 보고한 문건을 근거로 얘기하시는데 금융위에 보고한 문건은 그 당시 필요에 있어서 그런 문건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최종적으로 그것이 금융위에서 채택이 된 적도 없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무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채택을 안 하기로 했다고 저는 알고 있음. 현재로써는 10배 적용 배제와 관련해서 확정된 규정은 제

가 알기로는 없음.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될 것이냐, 배제될 것이냐는 것은 사례별로 판단하시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 (위원) 금감원에서는 오늘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또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제출자료의 차이를 조정해서 다시 내주시면 그것을 기반으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음.
- (보고자) 은행에서는 위반내용별로 지적건수를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냥 만든 자료가 아니고 검사당시에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중소기업은행 감사부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료임. 사본은 중소기업은행에 다 배부를 하고 의견 정리할 때도 이런 내용을 다 첨부해서 보냄. 중소기업은행이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됨.
- (보고자) 전체가 다 틀린 것이 아니라 일부가 불일치한데 금감원이 저희한테 처음에 주신 리스트와 이번에 수정해서 주신 리스트가 달랐음.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행에서도 그 리스트가 헛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듦.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은행 리스트도 왔고 금감원에서도 최종 리스트가 됐으니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확인을 해 주시는 작업이 있으면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함.
- (위원장) 금융위는 진술인 측에서 금투협회 규정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자필서명 받도록 2020년 2월 이후 발생했다

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법상 의무가 금투업 규정에서 이렇게 추가되는 것이 실제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업무 자체를 금투협회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적어놓은 것에 불과한 것인지, 그리고 원래 의무가 있다면 법정대리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와서 받아서 전달을 한 것으로 봐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법률해석과 관련해서 금융위에서 한번 보시고 다음번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바람.

- (보고자) 알겠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